

의안번호	제 89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29일

#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5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29일  
발 의 자 : 김국기,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의원

## 1. 제안 이유

도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 라. 실태조사 (안 제5조)
- 마. 지원사업 및 대상 (안 제6조~7조)
- 바. 의료비 지원 범위 (안 제8조)
- 사. 지원 신청 (안 제9조)
- 아. 의료비 지급 (안 제10조)
- 자.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 (안 제11조)
- 차. 협력체제 구축 (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환
  - 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3. “의료비”란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치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난치병 학생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6조의 지원사업
3. 난치병 학생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4. 난치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난치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2.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지원사업
  3. 교직원에 대한 교육
  4.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지원
- 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과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이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8조(의료비 지원 범위)** ① 연도별 1인당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중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본인 일부부담금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0조(의료비 지급)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협력체제 구축)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령

##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9. 9.] [법률 제1819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12.>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 □ 초 · 중등교육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8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 ·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재난적의료비지원법 [2021.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 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2.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3. “재난적의료비”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말한다.

## □ 국민건강보호법 [2020. 12. 29. 일부개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 의료급여법 [2019. 4. 23. 일부개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전문개정 2013. 6. 12.]

-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6조에 따라 난치병 학생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난치병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난치병 학생 수와 교육감이 결정하는 1인당 의료비 지원 한도액에 따라 소요 비용이 결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